

# 工業所有權 審判事例

國(內)事(件)

## 實用新案權利範圍確認

〈大法院 第1部 判決〉(1982. 2. 9)

裁判長：大法院判事 이 일 구

關與法官： // 이 성 열, 전 상 석, 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：오정택(전남 송평읍 신촌리 1000-1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한국포재공업 주식회사(서울 중구 서소문동 48의 2)
3. 原審決：特許廳 抗告審判所 1981. 2. 28字, 1979年 抗告審判 第90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### 5. 理 由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原審決理由 記載에 의하면 原審은 그 認容證據 등에 의하여 이 事件 登錄 第14802號 實用新案은 포리면지 (2)(1)사이의 접착층(3)에 균등한 간격으로 埋設된 실 (4)의 부위가 表面으로 露出되게 하고 표면지 (2)와 외부 防水層인 내열도 80以上の 透明樹脂層(PE라미네이팅 등)(5) 사이의 표면지의 表面(6)에 印刷層(7)을 形成하여서 2重의 방습층을 形成하는 두루마리 방습포장지이고 한편 이 事件 (가)호 圖面 및 그 說明書에 記載된 防濕包裝紙는 포리면지(1)(2)사이의 접착층(3)에 均等간격으로 실 (4)을 埋設하되 실의 부위가 포리면 모두에 露出되고 표면지 (2)와 外部防濕層인 PE라미네이트층 (5)사이의 표면지 표면상 (6)에 인쇄층이 형성되지 아니한 방습포장지임을 各 認定하고 나아가 이 事件 登錄考案이 그 出願전에 公知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事件 登錄考案에 對備하면 이 事件 (가)號는 表面紙 表面에 印刷層이 없다는 것이 相異할 뿐 完全 同一한 것이라고 判示하였는 바 記錄에 의하여 原審이 위 事實認定의 資料로 한 證據를 比較 檢討하여 보면 이 事件 登錄新案이 그 作用 效果面에서 新規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점에서

原審判示는 正當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過程에 採證法則을 違反하고 審理를 다하지 아니한 違法이나 特許法上的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의 法理를 誤解한 違法등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上告論旨는 그 理由가 없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### — 參 考 —

#### 抗告審判

1979年 抗告審判 當 第90號

抗告審判請求人：韓國포재工業(株)

被抗告審判請求人：오 정 택

위 當事者間의 1978年 審判 第353號(登錄 第14802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確認審判) 審決不服 抗告審請求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原審決을 破棄한다.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(被抗告審判請求人)의 負擔으로 한다.